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23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층이라는 의미인 “계층”이라는 용어를 순화하여 계층간 위화감 등을 해소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순화함(안 제명, 제1조~제3조)

○ 저소득<u>계층</u> ⇒ 저소득<u>주민</u>

나.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 조례에서 한 번만 나오는 용어는 정의에서 삭제하고 제3조 지원대상에서 직접 규정함

○ 보험료, 저소득주민 용어 정의 정비

다. 보험료 지원대상 정비함(안 제3조)

○ 정비: 한부모세대 ⇒ 한부모가족

○ 실효성 없어 삭제: 소년소녀가장세대

라.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지원 예산확보 규정 삭제함(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 근거:「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장애인복지법」제3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5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127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 1. 25.~2.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현황: 14개 시·군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를 “저소득주민에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저소득 주민에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세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들 둔 저소득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